

<붙임3>

제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자 진술예정서

1. 의견진술자			
2. 의견진술자 주요 경력			
3. 진술예정 내용 (요지)			
4. 제출할 입증자료 (기 제출한 증거 이외의 새로운 입증자료)			
5.기타	전화번호		모사전송
	대리인	성명 (Tel :)	

<참고>

제재심의위원회 진술방법 및 유의사항

-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실 경우,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재심의위원회에서 **별도 발표자료** 등을 이용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고자 할 경우,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전전일 정오까지 해당 발표자료 등을 검사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장 내에서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일체의 촬영, 녹음, 녹화 등은 허용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입장 및 소속, 직위성명 진술

- 검사국과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장에 동시에 입장하십니다.
- 회의장 입장 이후,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께서 요청하시면, 본인의 직장명, 직장내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

진 술

- 위원장께서 의견진술을 요청하시면 사전에 제출한 서면 의견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.
-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관련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검사국 의견에 대해 반박 또는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이후 관련 내용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위원장께서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하면, 최종적으로 진술 요지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퇴 장

- 의견진술이 종료되고 위원장께서 퇴장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면, 검사국과 동시에 회의장을 퇴장하시면 됩니다.
- 퇴장 이후에도 제재심 위원들의 추가 질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들의 최종 논의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